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방안

홍 은 선 (용인대학교 대학원)
김 태 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Private and Public Securities' Mutual Cooperation Plans to Deal with Crimes Threatening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Hong, Eun-sun / Kim, Tae-hwan

Abstract

Korean public power isn't currently performing its duties of crime prevention or public security services as effectively as the people expect from it due to excessive work load, insufficient budget, and equipment or work force problems, although it should protect the people from increasing crimes.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ivate security firms can't be enhanced unless both parties are involved. Above all, the private security companies should secure superior security personnel and provide them with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to improve their qualities. The police should also make an effort. In order to foster the private security firms soundly, the police should improve the system if necessary, and establish, guide and monitor the department wholly responsible for the private security affair. Both parties also should deal with crimes systematically by exchanging information for crime prevention, having informal meetings and introducing a joint patrol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crimes threatening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in our society, the public and private securities' mutual cooperation plans should be formulated. For this purpose to be achieved, the private security firms and the police should understand each other and bilateral efforts should be made. If both parties understand each other and make an effor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will be improved greatly and developmental plans for preventing crimes can be made.

[Key words : private security, joint patrol system , crime prevention, public security]

Ⅰ. 서론

오늘날의 사회는 경제규모의 팽창, 인구의 도시집중,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개인생활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10~20대들의 유흥비 마련을 위한 살인과 강 · 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로

인한 각종 민생침해범죄를 야기하고 있다.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바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이상원, 2005)

범죄에 대한 경찰대응능력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치안공백의 보완문제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이전부터 서구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다. 이제는 범죄문제가 국가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전개되어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치안유지를 위해서 경찰과 민간경비가 공적부문과 사적부분에서 협력을 하였는데 법집행과 범죄대응은 경찰이, 범죄예방은 민간경비가 각각 담당토록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안명선, 2002)

또한 예전에는 민간경비부문이 단지 치안활동의 보조적 차원내지는 별개의 차원에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이들을 능동적 · 주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민간부문을 경찰의 보조적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차원으로서 인식함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인적 · 물적 시큐리티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박준석, 2005)

이에 본 논문은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통한 민생침해범죄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기 위한 논문으로 어떻게 하면 민간경비와 경찰이 아무런 마찰 없이 협력하여 민생침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Ⅱ.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 이론

1. 민간경비와 경찰의 공동생산이론

최근 치안환경과 관련하여 치안서비스 생산과정에 있어서 경찰과 같은 공공부문의 역할증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능동적인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를 통한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론' 이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란 개념은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어온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민간부문은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citizens), 영리목적의 민간경비

(private security)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이들 민간부문을 단지 치안활동의 보조적 차원 내지는 별개의 차원에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이들을 능동적 · 주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민간부문을 경찰의 보조적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차원으로서 인식함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인적 · 물적 시큐리티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치안활동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는 필연성을 갖기 시작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결코 구별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치안활동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소위 '서비스주체의 다원화'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치안활동에 있어서 다원화된 전체라는 것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치안서비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민간부문을 독립된 주체로서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치안활동'(policing)은 곧 ' 공공경찰 '(public police)이라는 전통적 견해에서 보다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론적(Co-production) 접근은 치안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역할정립 및 상호관계를 이론적 · 실천적으로 체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박준석, 2005)

2. 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분담

오늘날의 범죄예방이나 치안 서비스의 제공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치안 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관계가 상호 갈등이나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적 관계를 갖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이윤근, 1999)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찰은 법적 권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간경비에 비하여 보다 많은 권한과 규제력을 갖는다. 경찰과 민간경비가 경쟁적 관계에 놓이는 이유의 일단은 양자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령이나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서진석, 1999)

경찰과 민간경비는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관련정보와 자료의 교환 및 상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공공부문에서 전담할 것인가, 민간부분에서 전담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의 기준은 다양한 치안 행정수요에 치안 조직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수요자인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사회 통제 수단으로서 치안 활동은 공권력 뿐 아니라 국가 내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선진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민간경비 산업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한다.

3.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 경찰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륙법계의 경찰 제도를 채택해 오면서 전통적으로 국가 의존성이 강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또한 범죄는 더욱더 흉포화되고 지능화되어가고 있어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의 정도는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경찰은 과중한 업무, 인력부족, 장비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악조건 속에 놓여있다. 따라서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더욱더 민간경비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은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결국 손님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와의 협력관계의 증진이 국가의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생산적 요소를 논하여 보면 경찰과 민간경비는 범죄예방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은 자신들의 순찰구역을 통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하게 되며 민간경비는 특정의 의뢰인을 상대로 시설 · 호송경비와 신변보호를 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중첩적 · 협력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치안서비스라는 틀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며, 이는 단일한 경찰활동만으로 범죄예방을 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효과를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조영일, 2002)

Ⅲ. 민간경비와 경찰의 현황

1. 민생침해범죄의 유형별 실태

〈표3-1〉 민생침해범죄 발생현황(5대 범죄 위주로)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 생					
1999	383,976(100)	976(0.3)	4,972(1.3)	6,359(1.6)	89,395(23.3)	282,274(73.5)
2000	520,763(100)	941(0.2)	5,461(1.0)	6,855(1.3)	173,876(33.4)	333,630(64.1)
2001	532,243(100)	1,051(0.2)	5,692(1.1)	6,751(1.3)	180,704(33.9)	338,045(63.5)
2002	472,369(100)	957(0.2)	5,906(1.3)	6,119(1.3)	175,457(37.1)	283,930(60.1)
2003	497,066(100)	998(0.2)	7,292(1.5)	6,531(1.3)	187,352(37.7)	294,893(59.3)
2004	455,840(100)	1,084(0.2)	5,834(1.3)	6,959(1.5)	155,393(34.0)	286,570(62.9)
2005	487,847(100)	1,061(0.2)	5,172(1.1)	7,323(1.5)	188,960(38.7)	285,331(58.5)
2006	489,575(100)	1,074(0.2)	4,832(1.0)	8,759(1.8)	192,808(39.4)	282,102(57.6)
2007	521,142(100)	1,104	4,430	8,732	212,473	294,403

주) 폭력행위는 형법상의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유인, 공갈, 손괴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합한 것임.
자료 : 사이버 경찰청, 2008.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범죄율은 1999년에는 383,976건 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532,243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다시 475,369건으로 줄어들고 2005년에는 다시 487,847건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2001년 이후로 조금씩 범죄율이 들쑥날쑥한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다. 2007년에 들어와서는 다시 50만 건이 넘는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사건은 점차적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절도사건은 큰폭으로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강간사건과 살인사건 역시 작은 폭이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생침해범죄에서 폭력과 강도에 대한 비중은 낮아지고 점차적으로 살인과 강간 그리고 절도 부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민간경비와 경찰의 현황

1) 민간경비

(1) 민간경비의 현황

민간경비업체는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8년의 법제정 당시에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는 785개로 증가하였고, 1997년에는 1,151개로 천 단위가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2007년 현재의 전국에 분포하는 민간경비업체는 2,834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의 민간경비업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

또한 민간경비원의 수를 보면 처음에 4,991명이 근무하던 것이 시작하던 것이 20여년이 지난 2007년 현재는 135,400명이 근무함으로써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표 3-2〉에 나타났다.

〈표 3-2〉 연도별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 현황

구분	1978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비업체 수	10	785	975	1,151	1,75	1,707	1,882
경비원 수	4,991	44,720	52,489	62,419	52,343	71,481	81,618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비업체 수	1,929	2,051	2,163	2,322	2,515	2,671	2,834
경비원 수	97,117	107,963	104,872	105,697	122,327	127,620	135,400

출처 : 사이버 경찰청, 2008.

민간경비업계는 앞으로도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따라 이러한 성장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에 더불어 질적인 성장 역시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 업무 유형

민간경비에서 행하는 범죄예방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이 있다.

①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시설물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은 오늘날 경비산업에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비서비스이다. 시설경비는 우리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②호송경비업무란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금수송 경비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는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출장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백화점, 현금 및 보석 취급소, 핵연료 등 위험물 취급자 등이다.

③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연예인들과 국회의원들 외에도 일반인들도 경호업체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 기계경비업무는 은행을 비롯하여 각종 회사, 공장, 점포, 그리고 일반가정에 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다.

⑤특수경비업무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국가중요시설에는 공항, 항만, 방송국, 발전소, 국책은행 등이 있다. 이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의 저하나 파괴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문제가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력의 한계로 인해 1970년대부터 청원경찰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를 담당해왔다. 현재 법의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특수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민간경비는 우리나라의 민생치안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방범업무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경비의 지위와 권한을 향상시켜 보다 적극적인 안전과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간경비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 등으로 인하여 범죄예방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경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들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물론 업무의 경중의 차원으로 볼 때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겠지만,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법률적 보호와 함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민간경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법적지위는 사인으로서 민간경비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인체포나 감금의 행위는 형법 제276조에 의해 감금죄를 구성하게 되므로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민간경비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경비업계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대응에 있어서 경찰과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2) 경찰

(1) 범죄발생 및 경찰인력 현황

경찰의 치안역량 증가는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인력과 장비의 증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표 3-3〉에서의 총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매년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하여 2006년에는 1,719,075건으로 줄어들었다.

〈표 3-3〉 총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발생	1,739,558	1,860,687	1,833,271	1,894,762	1,968,183	1,733,122	1,719,075

출처 : 사이버 경찰청. 2008.

앞의 〈표 3-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범죄발생 수에 비하여 경찰관의 국민 1인당 담당하는 수는 2007년 현재 509명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의 1인당 담당인구는 2004년 519명에서 2007년에는 509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낮아졌지만 아직도 경찰관 1명이 509명이라는 인원을 담당해야 한다는 현실에 있다.

〈표 3-4〉 경찰의 인력 및 1인당 담당인구 추이

(단위 : 명)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경찰관	87,419	89,629	90,515	90,623	90,670	90,819
인구	524	516	516	518	522	526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찰관	91,592	92,165	93,271	95,336	95,613	96,324
인구	527	523	519	509	510	509

출처 : 사이버 경찰청. 2008.

이처럼 부족한 경찰인력과 예산으로 담당해야할 업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경찰은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위한 범죄예방과 순찰활동 뿐만 아니라 범죄

에 대한 수사 · 단속 · 검거활동, 재해와 사고 대처활동, 혼잡 · 시위경비활동,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기초질서 확립 및 유해환경정화활동,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및 교통사고 조사활동,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국가안보강화활동, 국제적 수사공조활동 등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육성발전에 국가가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112신고센터의 운용 현황

'112신고'는 국민이 경찰에게 치안서비스를 요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창구이다. 1957년 '112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49년 동안 운영되면서, '112제도'는 항상 국민과 함께 해왔다.

'112제도'는 국민이 긴급전화인 112로 신고하면, 최단시간 내 경찰이 현장에 출동 ·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신고의 접수와 지령을 행하는 '112신고센터'와 112순찰차 · 형사기동대 등의 '출동요소'로 구성되며, 각각이 전산 · 통신망으로 유기적 연결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즉, 신고자가 '112신고'를 할 경우 이를 '112신고센터'가 접수 · 분석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 · 형사기동대 · 지역경찰관 등에게 무선 지령을 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112제도는 국민과 경찰활동을 긴밀히 연결하는 기본망이다. 이제 '범죄신고112'라는 표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112제도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되었다. 112제도는 주민이 긴급전화인 112로 신고하였을 때, 최단시간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112신고센터, 112순찰차를 비롯한 경찰 출동요소와 전산 · 통신망 세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주민신고가 「112신고센터」에 접수되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자, 형사기동대 차량, 지역경찰관 등에게 무선으로 출동지시를 하여 현장에 즉시 출동하게 된다. 아울러 차량 이용범죄 등 기동화, 광역화 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는 물론 인접 경찰관서에까지 일제 지시하여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입체적인 검거작전을 펼치게 된다. 이와 함께 컴퓨터와 첨단 통신을 활용한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112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112제도의 자동화작업을 추진하여 모든 과정이 컴퓨터를 통해 조정 · 통제되는 체제를 완비하였다. 이와 같이 112 신고접수에서 현장조치까지 신속 · 정확히 수행함으로써 범죄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많아져, 2005년 주요 5대 범죄 사범의 현장 검거율은 80%로 집계되었다.

〈표 3-5〉 112신고센터 설치현황

총계	주 112센터			보조센터	현 원		
	계	지방청	경찰서	경찰서	계	경찰(여경)	전의경
243	153	11	142	90	1,078	885(122)	193

주) 주 112센터 : 112신고접수와 지령, 종결업무를 모두 취급
보조 센터 : 주센터의 지령을 받아 중계 지령
출처 : 경찰백서, 2006.

2006년 112신고센터는 〈표 3-5〉와 같이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243개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기동순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112순찰차'는 2007년 전국 지구대 826개소, 파출소 238개소 중 도서지역으로 순찰차 운용이 불가능한 파출소 7개소를 제외한 지역에 3,639대가 배치되어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신고 즉각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표 3-6〉 112신고전화 접수

(단위 : 천 건)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신고접수	1,557	1,687	2,044	2,594	3,178	3,396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신고접수	3,522	4,078	4,692	5,012	5,409	6,228

자료 : 사이버경찰청, 2008.

112신고 접수건수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다. 1996년 1,557,270건, 1997년 1,687,528건, 2001년 3,396749건 2004년 4,692,039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2007년 총 112신고 접수건수는 2006년보다 15.1% 증가한 6,228,000건(하루 평균 17,063건)으로, 1분당 평균 1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112접수 도착시간 현황

(단위 : 천 건)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건수	1,448	1,576	1,935	2,403	2,937	3,143
5분 이내 (%)	1,340 (92.6)	1,473 (93.5)	1,794 (92.8)	2,252 (93.8)	2,704 (92.0)	2,915 (92.8)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건수	3,332	3,755	4,389	4,617	5,409	6,228
5분 이내 (%)	3,053 (94.1)	3,192 (85.0)	3,527 (80.1)	3,780 (81.9)	4,140 (76.5)	5,198 (83.4)

출처 : 경찰백서, 2008.

총 현장출동 건수는 1996년 1,448,490건에서 2007년 6,228,000건으로 많은 증가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총 현장출동 건수 6,228,000건에서 그중 5분 이내 출동률은 83.4%이다. 1996년 1,340822건 92.6%보다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5분 초과 출동의 사유는 동시다발 17.4%, 원거리 16.0%, 장소불명 13.1% 등으로 나타났다. 인력 · 장비 집중운영체제인 지역경찰제 전국시행 이후로 중요상황 발생 시에는 인접 순찰차 3?4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112신고 이후 현장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112신고체계가 범인이 도주한 후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였더라도 범인은 이미 신고 전에 범행현장을 벗어난 후가되기 때문에 현장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인이 범행현장에 침입할 때 또는 현장에 있는 동안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경비의 경우 신속한 신고출동으로 이어진다면 범인의 현장검거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그간 '112신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12신고 처리시스템을 자동화하여 모든 과정이 컴퓨터를 통해 조정렴 · 통제되는 체제를 완비하였다.

또한 신고자의 전화번호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도 경찰이 현장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신고자 전화번호확인시스템(ANI : 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및 '신고자 위치확인시스템(ALI : Automatic

Location Identification)' 을 운영중에 있다.

그리고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IDS : Instant Dispatch System)을 2004년에 도입 • 시범운영에 들어간 이후 지속 시행하였다. 순찰차에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을 장착, 신고현장에서 최근거리의 순찰차를 출동시킴으로써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순찰차 등의 각 출동요소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범인검거 등 범죄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첨단 시스템이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2007년에는 대구 등 신고건수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Ⅳ.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방안

1.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강화 방안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혼성치안기구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혼성치안기구의 구체화가 되기 위해서는 협동방범자문서비스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민간경비와 경찰이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모든 민간경비 업체명과 경비상품의 목록을 일반시민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경비자문서비스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경비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그 동안 민간경비업계가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고 기타 제반사항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하여야 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경찰청 방범기획과 방범기획계에서 전반적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경비원 및 경비업체의 급증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통제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한 가지 대안으로서 '경찰위원회' 가 민간경비의 전체적인 규율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경찰위원회의 지위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책임자 간담회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와 경찰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한마디로 '함께하는 것' 즉, 서로의 역할, 능력 그리고 책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과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민간경비와 경찰은 책임자간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책임관할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 조직은 평상시 범죄예방차원에서 범죄의 형태, 시간, 방법 그리고 범죄의 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교환이나 이들에 대한 방범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하고 범죄사건 발생 시에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범죄발생 현장보존이나 범인체포를 위한 업무역할선정 등에 관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여 둘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친밀화 정책은 모든 문제를 공식화하고 민간경호경비와 경찰 사이에 경험과 접촉을 통해 생겨날 수 있는 편견 등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게 된다.(이윤근, 1994)

2. 법적 · 제도적인 보완 방안

민간경비원의 자질향상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법적 · 제도적 사항은 현재 형사법상, 민사법상, 행정상, 직무상, 지휘체계상, 경찰업 허가 기준 및 배치, 공경비법과 민간경비법의 이원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사법상의 문제로 민간경비원이 형사소송상, 특히 수사활동에 관하여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기한 피의자에 대한 체포 등과 증거수집 활동이라 할 수 있는바, 후자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수사한 수사기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사인적 지위를 가진 민간경비원의 활동에 의한 증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증거가 직접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은 없고 다만 법정에서 소송당사자에 의하여 증거로서 원용될 경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사법상 문제로 중요한 법적 문제로는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경비원"의 업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경비업자"가 이를 배상하도록(경비업법 제 14조)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법리와 동일하다 할 것이다.(민법 제 756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서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까닭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경비업법 제 14조 제 2항).

세 번째, 행정상의 문제로 경비업자와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을 유의하고 시설주 등의 관리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도 아니 된다.(경비업법 제6조 1항)고 규정하고있다. 이와 같이 민간경비의 수요급증에 따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적절한 행정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네 번째, 직무상의 문제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의 직무에 있어 종류나 단위가 몇몇 특수한 경비시설물을 제외하거나 거의 같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에 그 직무범위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그리고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거주 외국기관 내무부령으로 정한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업소, 여행장, 유원지, 주차장 등의 시설 및 장소의 도난, 수행, 혼란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 방지사무와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실금리, 상품, 기타 물건의 도난, 수행 등의 위해발생 방지업무를 직무의 범위로 하고 있다 청원경찰이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몇몇 경비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민간경비가 훨씬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경비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 번째, 지휘체계상의 문제로 지금까지 현 민간경비업법(청원경찰법, 경비업법)을 분석하여 보면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의 지휘체계는 매우 흡사하며 관할경찰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각 사업장마다 민간경비업자나 청원주 등의 지휘가 실시된다.

실제로 민간경비나 청원경찰 모두 관할경찰서장의 지휘하에 요원들의 근무수행상황이 감독되고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이 실시 및 청원주가 임명한 전문적인 경비지식을 가진 지역경비 책임자 또는 사업장별 감독자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볼 때 비슷한 지휘체제하에 양립되어 있는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의 존립을 효율적인 경비업무에 있어서 혼동이 야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경찰업 허가 기준 및 배치의 문제로 민간경비업의 허가제라는 의미는 민간경비업의 성격상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 내지 규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이며 또한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의 허가기준에서 범인의 임원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민간경비업의 영업허가 취소를 받은 자가 아니면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금고 이하의 형을 받은 전과자가 민간경비업의 대표가 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처럼 법인 임원의 자격에 있어서 결격사유 및 몇 가지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이나 이 분야의 경력 및 학력 등에는 하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일곱 번째, 공경비법과 민간경비법의 이원적 운영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민간경비 제도는 1970년대의 국가 근대화사업에 수반되는 주요 시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청원경찰제도(경비방재위원회 시설 경비회, 1985)와 민간경비 제도와의 이원적인 운영체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출발했다.

두 제도는 각기 고유한 특성과 영역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며 발전해 왔으나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청원경찰의 존재의의와 독자적인 고유영역이 점차 축소됨

으로써 독자적인 법적, 제도적 발전보가는 공경비업법과의 통합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원경찰은 보다 국가적, 공공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배치되고 있다고 관념 되어 왔으나 배치시설의 측면에서 보면 민간경비든 청원경찰이든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민간경비원에 대한 전문자격증제도는 현재 미국 ·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 공항검색업무를 대체로 민간경비회사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진환, 2001)

국가에서 공인한 민간경비원 전문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각종 중요산업시설에 배치시킴으로써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경비인력의 자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경비업법 중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원적인 운영 때문에 민간경비업 업무수행에 비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들 양 법이 독자적으로 분리 · 운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양 법의 분리운영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교육훈련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려우며, 경호경비원의 사기 문제와 직결되는 보수의 적정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또한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구조 때문에 전체민간경호경비원들의 신분상의 통일이 곤란하며, 청원경찰들의 총기사용에 따른 훈련부족으로 직무수행상의 능력부족 문제로 내세워 또 다른 형태의 민간경호경비 조직을 결성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사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경찰의 모든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기능은 경찰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경찰과 민간경비 그리고 시민 각자의 영역이 범죄예방과 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의 활동영역면에서는 상당히 배타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서비스 주체 상호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해결시 경찰과 같은 공권력에 귀착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3. 효율적인 역할분담

민간경비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공경비인 경찰과 상호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먼저 경찰과 국민의 민간경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민간경비원은 학력수준이 낮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견, 경찰만이 치안문제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동반자관계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은 민간경비를 범죄문제에 있어서 상호협력적이고 보완적인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증가하고 있는 범죄문제와 다양한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안서비스의 생산주체를 다원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범죄나 안전문제에서 경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민간경비인데 민간경비원들은 경찰이 자기를 경시하고 경비업무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박주현, 2000)나타났는바 이러한 갈등관계는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치안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의 동반자로 민간경비를 인정하고 양자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에 도움이 되고 또 양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민간부문의 치안서비스 생산활동이 공경찰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조직이나 경찰관 개개인은 치안서비스 생산 · 공급과정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것은 경찰 자체에도 이익을 가져다주며, 궁극적으로 치안서비스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하며, 이는 일선경찰 뿐만 아니라 정치적 ·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히 정치권력과 같은 외부환경의 주체들도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이 경찰의 인식전환이 보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치안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단지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찰관들에게 환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안된 공동생산모델이 최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적용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Jeffey L. Brudney, 1991) 이러한 과정속에서 경찰관 자신들에게 생기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경찰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태도 자체가 지역사회 지향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안명선, 2002)

결론적으로 앞으로 보다 급속하게 변화될 지식정보화사회의 시대적 ·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에 대한 요청에 경찰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는 민간경비업체의 범죄예방 · 대응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민간경비업체의 치안인력을 범죄예방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 인정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사이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곽대경, 2001)

4. 상호 신뢰성 유지

우리 사회에서 민간경비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공동목적으로 하는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사이의 상호역할에 대한 기준설정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었고, 지금은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양자간의 공조와 상호작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간경비가 독자적으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경찰과 마찰은 생겨나지 않았지만 멀지 않아 방범활동에 있어 역할기준설정 문제가 대두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역할기준설정은 양자 간의 마찰해소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가능한 조속히 검토되어, 앞으로 전개될 민간경비 발전에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경찰은 민간경비를 범죄예방활동만을 담당하는 편향된 시각으로 불명확한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여 왔다. 또한 방범순찰에 대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순찰을 위해서 협력순찰기구를 창설하거나, 현 기관 중 가장 적합한 곳에 두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가장 적합한 곳이란 우선 전담 조직이 상시 편성되어 있어야하며, 우범자나 우범집단에 대한 관리, 인 · 물적 광범위함과 자료가 축적되고 전문 인력이 확보된 곳이어야 할 것이다.(안명선, 2002)

이제는 급격한 치안수요의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경찰만의 힘으로 사회가 요청하는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고, 민간경비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과 민간경비가 함께 공조하고 중복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두 조직의 책임자들 간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상호신뢰를 형성해 가고, 근무지역과 대상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협동순찰활동, 비상연락망체제구축, 그리고 방범자문범죄예방활동에 공조할 수 있어야 한다.(이윤근, 1999)

Ⅴ. 결 론

현재의 우리사회는 각종범죄의 질적 · 양적 팽창으로 인해 치안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최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력은 인력 · 장비 ·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민간경비와 함께 협력방범체제를 유지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범죄예방에 힘쓰는 경찰에게만 전반적인 사회치안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만이 범죄에게 대응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결국 사회안전의 문제는 국가내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길만이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통한 민생침해범죄 대응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생침해범죄의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민생침해범죄 피해자신고센터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이는 '112제도'를 들 수 있는데 국민이 긴급전화인 112로 전화하면 최단시간내 경찰이 현장에 출동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 경비업법중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원적인 운영 때문에 민간경비업 업무수행에 비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를 양법이 독자적으로 분리 · 운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원경찰제도와 경찰 그리고 민간경비가 함께 그 임무를 새로운 제도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의식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경찰과 국민의 민간경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민간경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앞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와 경찰이 서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즉 상호협력적이고 보완적인 동반자관계로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경비와 경찰협력 조직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민간경비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과 민간경비가 함께 공조하고 중복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범죄를 해결하는 등 국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치안서비스 생산의 공동생산주체인 민간경비와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우선적으로 상호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며, 정책입안자들과 국민들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는 현재의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능화 · 흉포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한 삶'을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높여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통한 민생침해범죄 대응방안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하나씩 해쳐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쳐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앞으로의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관계는 많은 발전을 가져와 국민들의 범죄예방에 대응하는데 있어 증진적인 방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곽대경(2001),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 「수사연구」 4월호.
2. 박준석(2005), 「민간경호 · 경비산업론」, 서울: 백산출판사.
3. 박주현(2000), "공안행정의 민간부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4. 서진석(1999),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5. 안명선(2002),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통한 방법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6. 이건종 · 전영실(1994), "미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7. 이상원(2003),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방범체제 구축방안", 「경호경비연구」 제6호.
8. 이상원(2005), 「범죄예방론」, 서울: 대명출판사.
9. 이윤근(1994), "2000년대 민간경비의 전망과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논총」, Vol.33.
10. 이윤근(1999), 「민간경비론」, 서울: 육서당.
11. 정진환(2001), "개정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정기학술세미나.
12. 조영일(2002),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범활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3. Jeffey L. Brudney(1991), Coproduction and Local Governments in Kemp, Roger L.(ed.), Privatization :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by the private sector (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14. S. Walker(1992), The police in America : An introduction, McGraw Hill.14. S
15. http://www.police.go.kr

논문접수일 : 2008년 5월 6일
심사의뢰일 : 2008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23일